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기후환경본부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

기후환경본부

□ 총 1건 전의

□ 목 록

연 번	전의제목	전의부서
1	지자체 녹색생활 확산 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전의)	친환경 건물과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1. 지자체 녹색생활 확산 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 (법무담당관, '23. 10. 13.)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실천지원사업 및 녹색생활 확산제도(에코마일리지 등)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위임조항 등이 미비 ○ 에코마일리지 지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주민 번호를 처리, 에코마일리지 신청 주소와 실거주여부 확인이 필요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마일리지 지급 대상자의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실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로 법령(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자료 이용 및 활용에 제한 ○ '기후위기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사무이고, 지자체 위임조항이 없으므로 우리시는 주민번호 관련 정보처리 불가 통보 <p><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제도(에코마일리지 등) 추진 근거 명문화 	(환경부)
2.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 (친환경건물과, '23. 8. 7.)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활용을 위한 고유 식별정보 처리 조항 신설 ○ 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 사업에 대해 고 유식별정보 이용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input type="checkbox"/>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2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67조 3항 	